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6월 3일,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9.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원택 의원)

최근 통계청의 발표자료(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의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등 농가의 생산비는 크게 폭등한 데 반하여 농가의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듯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가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도 부재한 상황으로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법인의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

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도 제고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고,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4.)」에서도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이 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의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 명칭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도입하여 농가의 소득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포괄적·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조문을 두어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와 불

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될 여지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